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국 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 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주)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3년 12월 28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3월 3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자산운용(주) 본점(☎ 02-2122-2800 www.hkfund.co.kr)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금리])$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전략]

□ 주식에의 투자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는 기업탐방, 외부 리서치자료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성 및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 할 예정입니다.

공모주투자	- 공모 기업에 대한 전문적 가치분석 및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투자판단 - 공모주 투자는 발행시장의 특성(Capital Gain)으로 약세장에서도 수익 발생 가능 - 펀드 투자만으로 IPO 시장에 직접 참여한 것 같은 기회 제공
Event Driven	- 대량 매매 : 대주주가 대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할인하여 주식을 매수 - 밸류에이션 매매 : 기업이 루머 등으로 기업가치가 단기에 크게 훼손되었거나 적정 기업가치와 현재 기업가치의 밸류에이션 갭이 클 경우 대상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 회복 시 차익 실현

※ 대량 매매 전략 : 대주주가 대규모의 주식을 팔고자 할 경우 시장에서의 시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전략

※ 밸류에이션 매매 전략 : 기업 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루머로 인해 단기간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을 때, 적정 기업가치와 현재 기업가치의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졌을 경우 대상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 회복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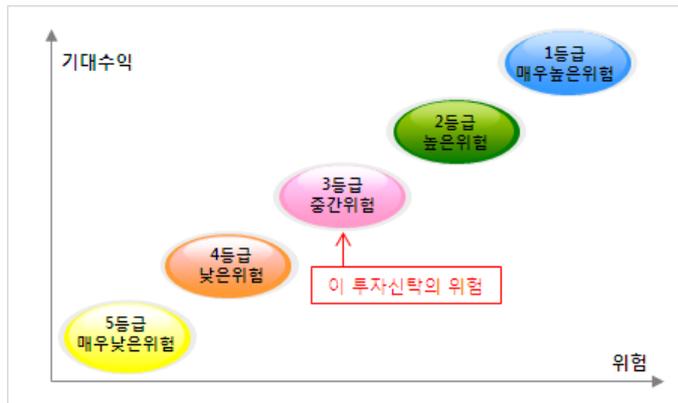
□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 이상)등에 투자운용할 계획입니다.

- 편입자산 듀레이션을 1년~1.5년 수준으로 운용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체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기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에 투자하는 증권자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흥국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4.3.12 현재)

성명	구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현진 (1967)	책임운용 전문인력	주식운용 본부장	24개	1,1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농업경제학과 - 94.08 ~ 98.07 : 한국산업증권 조사부 - 99.12 ~ 01.12 : ING Barings 리서치팀 - 01.12 ~ 08.12 : 튜브투자자문 리서치팀

					- 09.02 ~ 13.11 : 하나UBS자산 주식운용본부 - 14.03 ~ 현재 : 흥국자산 주식운용본부
성일환 (1969)	부책임용 전문인력	채권운용 본부장	50개	49,519억	- 서강대 경제학과 - 93.12~00.02 : 동부증권 채권팀 - 00.02~01.04 : 동부투신 채권운용팀 - 01.06~02.12 : 서울투신 채권운용팀 - 03.01~04.07 : 유리자산 채권운용팀 - 04.07~11.03 : 동부자산 채권운용본부 - 11.04~현재 : 흥국자산 채권운용본부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 및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_세전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2.12.29 ~13.12.28	11.12.29 ~12.12.28	10.12.29 ~11.12.28	09.12.29 ~10.12.28	09.06.29 ~09.12.28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81	6.66	3.93	6.22	2.94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7.24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1	1.44	5.26	2.55	4.82	2.27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7.24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e	1.76	5.58	2.84	5.15	2.50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7.35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A-1	1.49	5.30	2.60	4.87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i	1.80	5.61	2.90	5.17	
비교지수	2.19	5.66	-0.07	8.99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C-w	2.43	0.87	0.00	0.00	
비교지수	2.19	1.19	0.00	0.00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2	1.54	5.35	2.65	1.57	
비교지수	2.19	5.66	-0.07	6.95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3	1.63	5.44			
비교지수	2.19	5.66			
홍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4	1.71	3.36			
비교지수	2.19	3.65			

※ 비교지수 : (0.3 * [KOSPI]) + (0.55 * [KOB120]) + (0.15 * [CD 금리])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A-1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
종류C-1	제한없음	-	-		-
종류C-2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		-
종류C-3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		-
종류C-4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		-
종류Ci	10억 이상 투자개인, 20억 이상 투자법인	-	-		-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	-		-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종류C-w	일임형종합관리계좌, 금전신탁계좌, 집합투자기 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제3 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의 개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
종류C-y	변액보험	-	-		-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 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에 가입하는 투자자	-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종류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 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	-	-	-	-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 %)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A-1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p	종류 C-w	종류 C-y	종류 S	종류 S-p	
집합투자 업자보수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0.3500	매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000	0.9500	0.8500	0.7600	0.6800	0.6000	0.6640	0.8000	0.0000	0.0100	0.2500	0.2000	
신탁업자 보수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0.023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0.0170	발생 시
기타비용	0.0024	0.0024	0.0023	0.0024	0.0023	0.0023	0.0016	0.0109	0.0006	0.0200	0.0016	0.0109	
총보수· 비용	1.2924	1.3424	1.2423	1.1524	1.0723	0.9923	1.0556	1.2009	0.3906	0.4200	0.6416	0.6009	-
합성 총 보수·비 용 (실제 운용되는 투자신탁 의 총보수· 비용 포 함) (클래 스 투자 집합투자 기구 총 보수·비 용 포함)	1.3014	1.3497	1.2500	1.1636	1.0779	1.0019	1.0655	1.2009	0.3926	0.4200	0.6416	0.6009	-
증권거래 비용	0.0249	0.0253	0.0228	0.0245	0.0275	0.0248	0.0252	0.0472	0.0047	0.0500	0.0252	0.0472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6.29 ~ 2013.06.28]

주 2)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와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6.29 ~ 2013.06.28]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

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이 통합펀드(실제 운용 되는 펀드)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통합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A-1	30	132	412	713	1,567
	종류 C	-	138	428	740	1,623
	종류 C-i	-	102	317	551	1,220
	종류C-e	-	108	337	585	1,294
	종류C-p	-	120	374	647	1,424
	종류C-w	-	40	126	219	494
	종류C-y	-	42	132	230	518
	종류S	-	64	446	720	1,500
	종류S-p	-	60	442	716	1,49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C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년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0%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종류C-p,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등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등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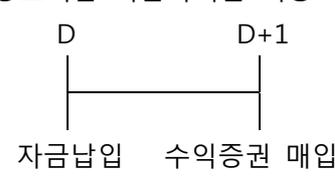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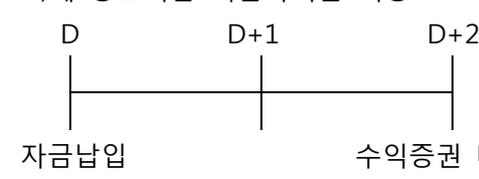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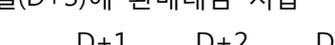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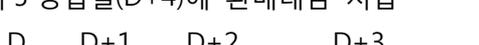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D+4)에 환매대금 지급 

--	--	--

4. 전환 절차 및 방법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클래스에 한합니다.

-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2)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또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3.12.28)	(2013.06.28)	(2012.06.28)
운용자산	40,323,752,449	52,329,786,398	28,877,214,689
증권	40,313,911,621	52,314,535,040	28,699,921,433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840,828	15,251,358	177,293,2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4,084,813	319,396,597	1,075,461,113
자산총계	40,337,837,262	52,649,182,995	29,952,675,80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4,185,083	326,931,403	6,407,871
부채총계	14,185,083	326,931,403	6,407,871
원본	39,572,414,766	49,932,698,050	28,210,095,505
수익조정금	-125,137,812	897,904,128	-834,353,016
이익잉여금	876,375,225	1,491,649,414	2,570,525,442
자본총계	40,323,652,179	52,322,251,592	29,946,267,931

흥국멀티플레이 30 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3.06.29 - 2013.12.28)	(2012.06.29 - 2013.06.28)	(2011.06.29 - 2012.06.28)
운용수익	876,545,027	1,493,927,984	2,574,067,612
이자수익	4,532,598	1,058,981,382	1,800,871,753
배당수익	0	5,980,000	17,447,625
매매/평가수익(손)	872,012,429	428,966,602	755,748,23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69,802	2,278,570	3,542,170
당기순이익	876,375,225	1,491,649,414	2,570,525,442
매매회전율	0.00	364.80	797.26

()

() : 30 []

1. : ? 가 () ?
2. ?
3. ?
4. 가 , , ?
5. ?
6. 가 , ?
7. 가 가 ?
- 가 .



() :)----()----

() : 30 []

	()
1. ? 가 ?	()
2. ?	()
3. ?	()
4. 가 , , ?	()
5. ?	()
6. 가 , ?	()
7. 가 가 ?	()

()